

플로린 카운티 수도국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

목적

본 정책은 플로린 카운티 수도국(이하 "수도국")이 미납된 주거용 수도 요금의 징수와 서비스 중단에 대해 취하는 행정 조치를 명시하며,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98호(Senate Bill 998), 보건 및 안전법(Health and Safety Code) 제116900조 이하에 규정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.

적용 범위

본 정책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만 적용됩니다. 수도국의 기존 정책은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에는 계속 적용됩니다.

접근성

수도국은 본 정책 및 본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면 통지서를 영어, 민법(Civil Code)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, 그리고 수도국 서비스 지역 거주자 중 최소 10%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. 본 정책은 수도국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유지됩니다.

연락처 정보

수도 요금 납부 및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, 수도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:

Florin County Water District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 미납 시 중단 정책

A. 지불 유예 및 감면 계획, 대체 지불 일정 (§ California Health & Safety Code § 116906 준수)

1. 지불 유예 또는 감면 계획

a. 지불 유예 계획(Deferred payment plan)

- 수도국은 미납 고객이 2회 청구 주기 이내에 계정을 정상화하기로 동의하는 경우, 지불 유예 계획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b. 감면 계획(Reduced payment plan)

-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감면 계획이 제공되며,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% 이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

-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:
CalWORKs, CalFresh, 일반 지원, Medi-Cal, SSI/SSP, WIC 수혜자이거나,
가구의 연소득이 빈곤선의 200% 미만이라고 고객이 선언한 경우.
-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, **미납 요금에 대한 이자 부과를 12개월에 1회 면제**합니다.

2. 대체 지불 일정(Alternative payment schedule)

- 수도국 총지배인 또는 지정인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월별 균등 분할 납부 또는 기타 적절한 지불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B. 청구서 이의신청 절차

- 고객은 총지배인의 결정 통보 후 **10일 이내**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청구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으며,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 최종적입니다.

C. 미납 방지 상담 안내

- 수도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은 **916-383-0808**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D. 웹사이트 공지

- 본 정책은 수도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E. Water Shutoff Protection Act와의 관계

- 본 정책은 캘리포니아 Health & Safety Code § 116900 및 이하 조항들과 상충할 경우,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.

F. 수도 서비스 중단 전 요건 및 통지

- 수도 서비스는 고객이 **최소 60일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** 중단될 수 있으며, 최소 **영업일 기준 7일 전**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.
- 통지 방식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포함됩니다:
 1. **전화 통지**: 정책 문서 제공 및 중단 방지 옵션 안내

2. **서면 통지:** 청구서 주소와 거주지 주소(‘Occupant’ 포함)로 발송되며, 내용에는 고객명, 주소, 미납 금액, 납부 최종일, 연장 신청 방법, 청구서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, 기타 지불 옵션이 포함됩니다.
3. **직접 방문 통지:** 전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서면 통지가 반송된 경우, 담당자가 거주지를 방문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중단 예정 통지서를 게시합니다.

F. 중단 금지 조건
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수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:

- a. 주치의(primary care provider)의 **의료 증명서** 제출: 서비스 중단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
- b. 경제적 어려움 증명 (§ 116910(a)(2))
- c. § 116910(a)(3) 및 본 정책에 따른 지불 계획에 대한 동의
 -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수도국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: 미납액 분할 상환, 대체 지불 일정, 미납액 전부 또는 일부 감면, 또는 일시적 지불 연기
 - 모든 지불 계획은 **기본적으로 12개월 내 완료**되어야 하며, 필요 시 총지배인이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
 - 지불 유예·감면 계획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**60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, 현재 청구 요금을 60일 이상 미납**하는 경우, 수도국은 **5영업일 전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물 통지 후**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G. 서비스 복구

1. 영업시간 내 복구

- 모든 미납 요금, 벌칙, 단전 및 재연결 비용을 납부하면 서비스가 복구됩니다.
-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% 이하인 고객에게는 재연결 비용 **최대 \$50** (실제 비용이 더 적은 경우 그 금액 적용), CPI 기준에 따라 연 1회 조정되며, 미납 요금 이자는 **연 1회 면제**됩니다.

2. 영업시간 외 복구

-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, 최소 직원 인건비 수준에서 책정됩니다.

- 저소득 가구의 경우 **최대 \$150**, CPI 기준 연 1회 조정, 미납 요금 이자 연 1회 **면제**가 적용됩니다.

H. 임대인-세입자 관계 시 특례

- 개별 계량된 단독주택, 다가구 주택, 이동주택에서 임대인이 계좌를 소유한 경우:
 1. **10일 전 서면 통지**를 통해 세입자에게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과 계좌 명의 전환 권리를 알립니다.
 2. 세입자가 약관을 수락하고 법률 및 수도국 규정을 준수하면, 수도국은 해당 단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3. 단독주택의 경우, 최소 **7일 전 통지**가 필요합니다.

I. 연간 중단 보고

- 미납으로 인한 연간 서비스 중단 건수는 수도국 웹사이트 및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제어 위원회(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)에 보고됩니다.

J. 통지 언어

- 모든 통지는 영어, Civil Code § 1632 언어, 그리고 고객 중 **10% 이상 사용하는 언어**로 제공됩니다.

K. 무단 행위로 인한 중단

- 본 정책 또는 지자체 조례와 무관하게, 고객이 **무단 행위**를 저지를 경우(예: 불법 연결 등), 수도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